

 신안산대학교	<b>전산정보원 규정</b>	규정 번호	3-1-27
		제정 일자	2024.4.15.
		개정 일자	
		책임부서/팀·계	전산정보원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고 한다) 전산정보원(이하 “전산원”라고 한다)의 조직과 정보화 기반 구축, 교수 및 학습정보화, 행정정보화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전산정보원의 운영을 위해 전산정보원 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고 한다)과 운영상 필요한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.

1. 원장은 본 대학교의 총장이 임명하며, 전산정보원내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
2. 직원은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3조(업무)** 전산정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
2. 정보화 장비 확보 및 전산망 구축과 운영 업무
3. 대학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
4. 대학 정보 보안 및 개인 정보에 관한 제반 사항
5. 대학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
6. 교직원, 학생, 지역 사회 정보화 및 교육 지원 업무
7. 본교 전산 관련 기자재(H/W, S/W) 구매 및 컴퓨터 실습실 관리 업무
8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
## 제 2 장 위원회

**제4조(위원회)**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정보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전산원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2. 전산원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정보화 장·단기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제반업무
4.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대학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
7. 정보보안 지침의 수립,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
8. 기타 전산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,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의 임기는 원장의 보직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

**제6조(회의 및 의결)**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『회의비 지급 지침』에 의거해 회의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**제7조(기타)** 그 밖에 전산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